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9.10.6

제출자 : 이정진의원외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
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
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나. 심사기간은 1999. 10 . 15.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,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
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
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조래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조래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래중개점조래안외 13건

3. 활동기간

- 1999년 10월 15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조래심사특별위원회 구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유강호의원, 김진석의원